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Mee Hyang Koo**, Soyoung Hwa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il University, Seoil Daehak gil 22,
Jungnang-Gu, Seoul 131-702,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typ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ubjective perception on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An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shifting views in teachers toward child right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Using Q-methodology, 40 statements representing the child's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lected as Q-sampl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PC QUANL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subjectivity on child rights before the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was formed in a single type. However, teachers awareness of child rights was divided into two types after implementing the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Type 1 was named as "non-discriminatory life protection-oriented type", Type 2 was named as "respect of the views and development through the caring-oriented type". Third, 6 teachers'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child rights were changed after receiving child rights education.

Key words: child rights, early childhood teacher,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유아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대표하는 총 40개의 항목으로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490-7257. E-mail: viakoo@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e. 30, 2014 / Revised: July. 17, 2014 / Accepted: July. 24, 2014

구성된 Q 표본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에 동일한 Q 소팅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단일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들은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한 반면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아교사의 인권 의식은 '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전과 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9명의 교사는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인권의식이 오히려 공고해졌으며, 6명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과 발달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아인권, 유아교사,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1. 서론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1990년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제3조),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제2조), 생존 및 발달을 보장받으며(제6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함(12조)을 일반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UN, 1989).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동권리 옹호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의미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유아도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인데(국가인권위원회, 2002; 문용린 외, 2003),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아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회도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영유아기의 인권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 7) '영유아기 아동권리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통해 유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발달수준에 적절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UN, 2005). 유아용 인권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 및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요구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치원 단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태도와 가치의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며,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연수를 통해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문용린 외, 2003).

아동권리협약은 발달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행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양희, 2007).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유아기는 특히 부모와 교사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사의 권리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유아를 성장 발달하는 인격주체로 존중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유아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김진숙, 2009).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인권에 대한 유아교사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사의 올바른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유아인권

인권이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아동의 인권은 수세기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아동의 인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시민권과 정치권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이 인권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너무 많은 힘과 통제권을 아동에게 부여하고 동시에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적 인물로부터 힘과 통제를 빼앗아가는 것 인양 생각하였다(Smith, 2008).

그러나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겼던 종래의 관점은 아동이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갖는 시민이자 사회적 참여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즉 아동의 욕구(needs)에 초점을 두는 대신 아동의 인권(rights)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을 취약하고 수동적인 개입의 대상으로 보았던 관점은 사회참여의 주체이자 탄력성(resilience)과 개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아동관으로 변화하였다(Smith,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이며, 보호권은 차별과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권은 정규적, 비정규적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UN, 1989).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는 나이 어린 유아도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며, 유아기가 권리 인식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출생에서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 학령기로 전환하는 8세 이하의 연령시기인 영유아기(early childhood)의 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유아가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진보하는 능력(evolutionary capacities)에 적절한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N, 2005).

유아에게 인권은 생활 가까이에서 직접 체득한 개념이 아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아는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권의 실행을 위해 유아가 사회적 놀이와 탐색과 학습을 위한 시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 양육과 정서적 돌봄, 그리고 민감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유아가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와 관점을 지니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유아의 인권은 실현될 것이다(이미숙, 2010; UN, 2005).

2. 인권교육

인권문화의 구축을 위한 지식, 기술, 정보, 훈련, 교육의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인권교육은 사회 전반에 인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의 역할을 해 왔기에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UN, 2010).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3년 1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아동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황옥경, 2010).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교사 연수 및 훈련, 인권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황옥경,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성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2008).

교실에서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인권교육은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자아존중 및 타인존중, 인권원리들을 지지하는 학급문화의 발달을 강조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자신과 타인의 권리문제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주어진 유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유아기의 인권교육은 기초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숙자 외, 2008). 그러나 영유아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관심부족

과 전문 인력 및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숙, 2010; 서영숙 외, 2009).

유아기 인권교육 관련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유아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 인간의 존엄성, 의사표현, 바람직한 권리 행사, 평등, 교육받을 권리 등 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미숙, 2010). 유아 권리교육의 방법은 동극 또는 역할행동 해보기, 이야기나누기와 같이 대화식, 시청각 교재나 교구를 이용한 놀이 활동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숙자 외, 2008; 서영숙 외, 2009).

국가인권위원회(2011)는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동화, 이야기 나누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활용한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전체 9회기동안 유아가 존중, 비차별, 안전과 건강, 교육과 휴식, 폭력으로부터 보호, 문제해결과 자기조절, 참여의 7가지 인권요소에 대해 학습하면서 능동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인권 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유아교사의 인권의식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는 유아가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도록 실제 생활경험에 기반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실의 인권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UN, 2010). 따라서 교사가 유아의 인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김숙자 외, 2008).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교사들은 유아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미숙, 2010; 장희수, 2009; 정오순, 2009). 유아권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장희수(2009)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보호권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여겼고, 그에 대한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정오순(2009)은 유아교육기관의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생존권과 관련된 교육활동이 가장 많았으나, 발달권과 참여권 역시 연간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유아권리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며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이 일과활동에 고루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사 중심의 활동을 흔히 볼 수 있고 유아의 개인적인 생활리듬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가 시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배송희, 2010; 최윤지, 2009). 그러나 유아권리교육 참여 경험이 교사의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유아의 행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배송희(2010)의 연구에서 유아권리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권위와 힘을 행사했던 일상을 반성하고, 유아

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유아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이미지화하였다. 김진숙과 서혜정(2011)은 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유아교사의 실천과 반성과정의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보았다.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유아권리교육에의 참여의지가 높아도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에 인권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교사가 유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유아교사 양성과 재교육과정에 유아인권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아인권교육 자료와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서영숙 외, 2009; 이미숙, 2010).

III.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이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표본은 자아참조적 항목으로 구성된 Q표본과 그것을 일정한 분포 속에서 분류하는 사람인 P표본으로 구성된다(김홍규, 2007).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내적 차이를 다루기 때문에 P표본의 수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오히려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김홍규, 1990; 2007).

Q 방법론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유아인권에 대한 자아참조적 항목인 Q 표본을 구성하고, 그것을 P 표본으로 선정된 15명의 교사로 하여금 일정 분포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김홍규(2007)는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면담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Q 모집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유아인권 분야의 전문가, 교사, 부모, 유아,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심층면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 소팅을 할 때 피험자는 어떤 조건하에서 행하게 되는데 이를 지시조건이라 부른다. 상이한 지시조건을 따라 여러 Q 소트를 구할 수도 있지만 단지 시차를 달리해 Q 소트를 구할 수도 있다(김홍규a, 2007). 예를 들어 Goldstein(2007)은 치료과정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 사람의 환자에게 20번의 치료를 하고, 각 치료 때마다 동일한 10개의 항목으로 Q 소팅을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김홍규a,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15명의 유아교사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후에 동일한 지시조건에서 Q 소팅 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인식변화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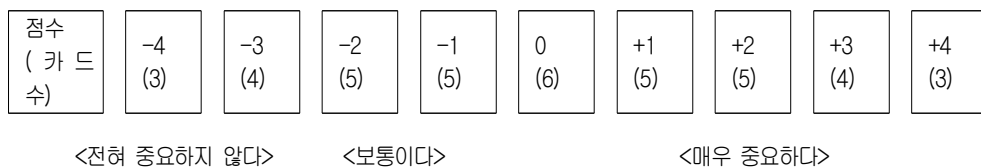
1. 연구대상(P표본)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5명의 교사이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 22세~만 31세(평균연령 만 25세)였으며, 출산 및 육아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이었다. 연구대상의 대부분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가 가장 많았다(<표 7> 참조).

2. 연구도구(Q표본)

유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진술문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이재연·강성희, 1997; 최미희, 2011; Hart & Zeidner, 1993), 전문가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유아교육 및 인권분야 전문가 3명, 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 교사 2명,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4명, 유아 9명, 일반인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진술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유아권리에 관한 총 72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대표하는 각 10개의 진술문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총 40개의 Q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이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분류함으로써 각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Q 소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이 진술문이 적힌 40장의 카드를 읽고 진술문의 중요성에 따라 긍정, 중립, 부정의 세 범주로 카드를 분류한 후 각 범주 내에서 진술문의 중요도를 세분류하여 미리 정해진 정상분포의 형태로 카드를 배치하였다. 카드의 분류가 끝나면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 분포의 양극단인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매우 중요하다’에 분류된 각 3장의 카드에 적힌 진술문에 대해 연구대상의 의견을 듣고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유아인권에 대한 연구대상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P 표본을 대상으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각각 위의 Q 소팅 과정을 거쳤다.



<그림 1> Q 소팅 분포도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대상 15명에게 집단교육의 형태로 2013년 9월~12월까지 주 1회 40분간 총 9회기의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2011)에서 개발한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의 회기 별 내용과 순서에 따라 핵심권리에 따른 동화를 듣고, 이

야기를 나눈 후 연구대상이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수행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평가는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주에 실시하였고, 사후평가는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 주에 시행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수집한 각 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해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의 번호를 부정(-4)부터 긍정(+4)까지 1점~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표준점수(Z-score)를 근거로 각 유형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유형간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점수 ± 1.00 이상으로 연구대상이 강한 긍정 또는 부정을 보인 진술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각 유형 내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심층면담 자료를 참고하여 유형의 특성을 밝혔다.

IV. 연구결과

1.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1) 1유형: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연구대상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한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이 유형은 아이겐 값 7.08, 전체변량의 47.18%를 설명하였다. 연구대상 모두가 동일 유형에 포함됨으로써 유아인권에 대한 유사한 의견과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유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과 심신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권리는 유아가 교육과 관련한 원조를 통해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교섭하는 참여권을 갖는 것,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경제권을 갖는 것이었다.

이 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8번(2.2529)과 9번(1.9648) 교사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이들은 “일단 생명을 누려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7)” “생명은 사람이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것(#7)”이라고 생각하

여 생명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힘이나 능력,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구조해야 하고(#22)”, “유아는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는 존재(#22)”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생활수준은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31)”“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갖추어져야(#31)”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보다는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34)”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11번 교사의 말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가기 위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유아인권에 대한 특별한 신념을 갖고 있기 보다는“아직 미숙하고 도움이 필요한”존재인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유아교사로서의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이 유형을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1>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7	생명을 누리는 것.	1.93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85
39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1.53
40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51
36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44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39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18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04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02
21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05
8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1.06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20
23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32
15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1.35
33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44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18

2.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두 유형의 아이겐 값은 1유형이 6.08, 2유형이 1.53이었고, 각 40.6%와 10.2%의 설명력을 갖고 전체 변량의 50.8%를 설명하였다. 1유형에는 9명의 연구대상이 포함되었고, 2유형에는 6명의 연구대상이 포함되었다. 두 유형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r=.33$ 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1) 1유형: **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1유형이 중요하게 인식한 권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으로부터 유아가 생존을 보장받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였다. 반면 1유형은 유아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생활을 보장받는 것과 교육적 원조를 통해 발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교사들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고, “아동의 생명 또한 어른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인권의 기초, 아동은 모두 다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말을 통해 생명권이 인류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6번 교사는“아플 때 치료받고(#39)”,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22)”이므로 유아의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마음껏 쓸 만큼의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그 안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31)” “어디가 되어도 하려고만 하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장소를 갖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유아가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한 2번과 12번 교사는“차별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기본 조건이므로” “유아가 다른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유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비차별적 존중이 인권 실현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7	생명을 누리는 것.	1.92
39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1.50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42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35
3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1.23
40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20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13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07
28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1.01
8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1.08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17
23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24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27
21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31
2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1.40
33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53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00

2) 2유형: 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

2유형은 유아에게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심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아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참여권, 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발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종교 선택권이나 1유형이 중요한 권리로 여겼던 참전과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구호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5번 교사는“아동은 성인처럼 생각이나 몸의 신체구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5)”신체적 위협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감정은 심리로 연결되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상해보다 감정을 다치는 것을 보호해야한다(#36)”며 유아가 심신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유아의 발달권에 대한 4번, 5번, 13번 교사의 견해에 의하면,“일반화된 교육(#34)”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 됨됨이를 배우는 것(#14),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유아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흥미가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정규 교육을 통한 발달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1번과 4번 교사는 “아이의 생각과 느낌에 관심을 갖고 반영해 주고(#6)”, “부모나 교사는 아동의 입장에서 존중해 주어야(#6)”하며 “아동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동과 관계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아동도 참여하여 자신의 의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37)”며 유아가 권리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3>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6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 것.	1.99
36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95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44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39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29
14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수 있는 것.	1.13
17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	1.06
37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1.03
27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할 수 있는 것.	-1.05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05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12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21
20	위험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1.33
3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1.50
35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1.67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39

3)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유형과 2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1유형이 2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이였다. 즉 1유형은 유아가 전쟁, 노동,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과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생존을 보장받는 것을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2유형은 1유형보다 유아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유아가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 여가와 놀이를 향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유아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존중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여적 권리가 유아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4〉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1.00 이상)

번호	진술문	유형 1	유형 2	차이
3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1.23	-1.50	2.73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42	-1.06	2.47
20	위험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82	-1.33	2.15
7	생명을 누리는 것.	1.92	-.08	2.00
39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1.51	-.44	1.94
28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1.01	-.32	1.33
40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20	.04	1.16
23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24	-.23	-1.01
36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93	1.95	-1.03
2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1.40	-.09	-1.31
11	자신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84	.52	-1.36
24	여가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	-.81	.69	-1.50
19	결정해야 할 일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70	.86	-1.56
14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수 있는 것.	-.55	1.13	-1.68
6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 것.	.26	1.99	-1.74
17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	-.69	1.06	-1.75

4) 1유형과 2유형의 공통 의견

〈표 5〉는 1유형과 2유형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을 보여 준다. 유아가 심신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중요한 권리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두 유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권리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종교 선택권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

과 교섭하며, 학습을 위한 공간을 갖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원조를 받는 것이었다.

<표 5> 유형 간 합의한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39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23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21
21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11
33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14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14
35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1.19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24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19

3.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분석

1)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유형 간 상관분석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결과 밝혀진 각 유형별 특성,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실시한 Q 소팅 자료 및 개별교사의 심층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교사의 인권의식을 반영하였던 단일 유형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교사의 인권의식을 대표하는 두 개의 유형 중 1유형의 요인구조 및 특성과 거의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표 1>과 <표 2>를 살펴보면, 한두 문항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차이는 있으나 두 유형이 유아 인권의 네 가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생존권과 보호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발견된 세 유형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의 단일유형인 사전 1유형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발견된 사후 1유형간의 상관이 $r=.92$ 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두 유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유형 간 상관분석

유형	사전 1유형	사후 1유형	사후 2유형
사전 1유형(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	1.00		
사후 1유형(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92**	1.00	
사후 2유형(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	.47**	.33*	1.00

※ ** $p<.01$, * $p<.05$

2)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의 유형별 변화와 요인가중치 분석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모두 1유형에 분류된 교사는 9명이었다. 이들은 인구학적 특성에서 특이할 점은 없었으나,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표할 정도로 요인가중치가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모두 안정적으로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인 8번 교사의 경우“유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라서 보호권이 중요하고, “생명의 존귀함 때문에” 생존권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인 6번 교사의 경우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가장 중요한 권리를 기술한 세 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Q 소팅 과정에서 동일한 카드(#7, #22, #39)를 선택하여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6번 교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안전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오히려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에 가치를 둔 자신의 인권의식을 강화했음을 고백하였다.

한편 유아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한 2유형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유형에 속하는 교사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들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1유형에 속하였다. 이들이 유형의 변화를 보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관련은 없었다. 그러나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실시한 Q 소팅 카드 분류판에 배치된 카드의 배열에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3번과 5번 교사의 경우,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한 후 유아가 정서적 위협을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36)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확고하게 표현한 반면 유아가 전쟁에 참여하거나(#32)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22)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인권의식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1번 교사를 제외하고 2유형에 속하는 모든 교사가 유아가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 것(#6)에 대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해 10번 교사는 “교사로서 경력이 많지만 아동과 관련된 일에 아동이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다”며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권이 유아의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표 7>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P표본)의 유형별 요인가중치

번호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관 유형	근무경력	직위	출산·육아 경험	사전		사후	
								유형	요인가중치	유형	요인가중치
1	여자	26	전문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3357	2	.3282
2	여자	23	전문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2512	1	.7426
3	여자	30	전문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6499	2	1.3833
4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3~5년미만	교사	없음	1	1.4124	2	.7811
5	여자	22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0033	2	2.0073
6	여자	29	전문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1.6945	1	4.5554
7	여자	23	전문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9643	1	1.6486
8	여자	26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3~5년미만	교사	없음	1	2.2529	1	2.1337
9	여자	25	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9648	1	2.7244
10	여자	31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5~10년미만	주임	없음	1	1.5310	2	.3711
11	여자	25	전문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1.8550	1	.7667
12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6560	1	1.3778
13	여자	26	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6612	2	.3201
14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6946	1	2.7935
15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5643	1	.666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을 알아본 결과 한 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이라 명명한 이 유형에 속하는 교사들은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에 비해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장희수(2009)의 연구에서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필요성 모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보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유아를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고, 단일 유형에 연구대상 모두가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독특한 유형을 발견하였다. ‘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로 명명한 1유형은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유아가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기본 원칙이다(UN, 1989). 선행연구에서 학부모와 비교하여 비차별에 관한 기본개념이 권리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각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서 타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교육하고,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장희수, 2009).

한편 ‘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으로 명명한 2유형의 경우, 발달권과 참여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였다. 즉 유아가 심신의 보살핌을 기반으로 여가와 놀이를 향유하고 타고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자로서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오순(2009)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발달권과 참여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유아교육기관의 연간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권리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간 교육주제에 따른 권리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미숙(2010)도 유아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의사표현과 바람직한 권리 행사라고 하였는데, 유아가 적극적인 권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교육현장에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1유형과 2유형의 공통의견을 살펴본 결과, 두 유형 모두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으나 상대적으로 종교, 경제권, 교육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유치원 일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유아 인권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김숙자 외(2008)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종교, 쾌적한 주거생활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권리가 유아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 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 단일 유형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밝혀진 두 유형 중 1유형과 거의 유사한 요인구조를 갖고 있었고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표준점수에 따른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한 두 문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시간 차이를 두고 동일한 피험자에게 실시한 Q 소트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점에서 동일한 두 개의 Q 소트는 없지만 한 개인이 행한 Q 소트들이 무한히 달라지지도 않으며,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Q 소트들은 상관되어 있고 몇 가지 독립적인 형태로 형성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홍규a, 2007).

한편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서 밝혀진 유형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홍규, 1990),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의 인구학적 변인은 각 유형을 설명하는데 관련이 없었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 유형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9명의 교사들은 단지 삶의 기본조건으로 생각하였던 생존과 안전에 대한 개념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유아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확인하였고,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인권

의식이 강화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변화를 보인 나머지 6명의 교사들은 유아인권교육이 유아의 참여권과 발달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신들의 인권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인권교육을 통한 유아교사의 반성적 성찰이 교사의 인권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배송희(2010)의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도 인권교육이 유아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유아교사의 유아인권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의 특성상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고 유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아와 부모, 가정과 교육기관을 잇는 매개자로서 유아교사의 역할이 크다. 유아교사가 유아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에 유아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들을 보급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유아교육현장에 유아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 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3-2008.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학교인권교육길라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숙자, 김현정, 장현정. 2008. 유치원의 일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유아인권교육 관련내용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2(2): 259-275.
- 김진숙. 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준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서혜정. 2011. 유아교실에서 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2): 53-79.
- 김흥규. 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언론학논선. 7: 20-57.
- 김흥규a. 2007. P표본의 선정과 Q소팅, 주관성연구. 12: 5-19.

- 김홍규b. 2007. Q표본의 특성연구. 주관성연구. 14: 19-39.
- 문용린, 광병선, 안경환, 한기철.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배송희. 2010. 유아권리교육을 통한 보육교사의 성찰과 영유아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13(3): 216-232.
- 이미숙. 2010.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희. 200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방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0주년 발표자료.
- 이재연, 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65-83.
- 장희수. 2009.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조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오순. 2009.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원의 인식 및 아동권리교육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희.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와 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지. 2009. 보육교사의 유아의견 존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옥경. 2010.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아동과 권리. 14(4): 677-706.
- Hart, S. N. and M. Zeidner. 1993.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Early Findings of Across National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 165-188.
- Smith, A. B. 2007. Children's Righ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2(3):1-8.
- 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 UN. 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United Nations.
- UN. 2010.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of the World Program for Human Right Education*. United Nations.

구미향: 성균관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영아기 애착관련변인과 모성행동 특성 분석, 2000), 현재 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유아인권교육, 고위험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지원, 장애아동 심리치료와 상담, 부모교육 등이다. 주요논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아동을 위한 모래상자치료 사례 연구(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족 간 유대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2012)” 등이 있다 (viakoo@hanmail.net).

황소영: 성균관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아동인권교육 강사로 활동

하고 있으며, 관심분야는 유아인권교육, 교사인권교육, 부모교육, 장애아동 심리치료와 상담, 재난심리지원 등이다 (younga214@naver.com).